

제283회 임시회
2009. 9. 21(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9. 21.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9월 4일

3. 상 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9. 1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강호동)

1. 제안이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제도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하고, 관련법률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채매입 및 매입확인을 전자적(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9조)

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 증권거래법 폐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09.2.4)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가. 개정개요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라 공채 매입 및 매입확인을 전자적(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령 및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법령과 조항을 변경하고,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라 공채매입 및 매입확인을 전자적(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9조)을 마련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이견이 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4
----------	-----

제출연월일 : 2009년 9월 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제도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정비
- 관련법률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2. 주요내용

- 공채매입 및 매입확인을 전자적(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9조)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 ※ 증권거래법폐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09.2.4)
-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기금”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는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일반회계등에서”를 “일반회계 등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과 제22조제1항 중 “도의회”를 “충청북도의회”로 하고, 제5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항 단서 중 “도교육감”을 “충청북도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및”을 각각 “나”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채매입 확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채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교부시
2. 제7조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른 계약자의 대금 청구시

제10조제2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계약등이”를 “계약 등이”로 한다.

제14조 중 “제4조에 의해”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중 “유통단지건설등”을 “유통단지건설 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도의회”를 “충청북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23조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채발행 등”을 “공채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1항과 제2항, 제3조제1항과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과 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과 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과 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과 제2항은 각각 항과 조문을 띄어쓰기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u></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u>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u>기금</u>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u>기금</u>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p> <p>② 관리자는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p> <p>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5 생략</p> <p>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u>일반회계</u> 등에서 기금내 별도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 자 전입, 출연하는 금액</p> <p>7. 생략</p> <p>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범위 안에서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u></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u>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u>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u>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p> <p>② <u>제1항에 따른</u>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3조(관리자의 지정) <u>기금</u>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는 <u>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u></p> <p>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u>각 호</u>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u>일반회계</u> 등에서 기금내 별도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 자 전입, 출연하는 금액</p> <p>7. 현행과 같음</p> <p>② <u>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 <u>범위에서</u>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p>

제5조(공채의 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공채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해 설립된 증권예탁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 ①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공채의 발행이율은 연 2.5% 복리로 한다.

③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선급한다.

제7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도 및 사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도 및 사군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자

2. 도 및 사군 또는 도 및 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생략

②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④매입대상별 공채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금액에서 일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공채의 발행)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채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 ① 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연 2.5% 복리로 한다.

③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선급한다.

제7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도나 사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도나 사군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자

2. 도나 사군 또는 도나 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④ 매입대상별 공채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금액에서 일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공채매입 면제) 생략

제9조(공채매입 확인)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채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등록증 또는 허가증 교부시
2.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계약자의 대금 청구시

제10조(공채의 상환) ①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도지사는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채의 시효) 생략

제12조(공채의 중도상환) ①공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개시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1. 공채의 매입원이 된 등록, 허가, 계약등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된 경우
2. 생략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공채업무의 위탁관리) 생략

제8조(공채매입 면제) 현행과 같음

제9조(공채매입 확인)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채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서명으로 같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다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교부시
2. 제7조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다른 계약자의 대금 청구시

제10조(공채의 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채의 시효)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채의 중도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개시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1. 공채의 매입원이 된 등록, 허가, 계약 등 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된 경우
2.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공채업무의 위탁관리) 현행과 같음

제3장 기금의 운영

제14조(기금의 용자)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용자할 수 있다.

제15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 생략

8. 기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제16조(용자순위) 기금은 상·하수도, 도로·주택 건설 및 유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재해복구사업,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에 우선 용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용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용자한다.

제17조(용자조건) ①용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지사가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자금을 담당 목적 사업에 용자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용자약정 및 용자절차) 생략

제19조(용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용자받은 기관이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용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16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중 수

제3장 기금의 운영

제14조(기금의 용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용자할 수 있다.

제15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제16조(용자순위) 기금은 상·하수도, 도로·주택 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재해복구사업,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에 우선 용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용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용자한다.

제17조(용자조건) ① 용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성된 회전자금을 해당 목적 사업에 용자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용자약정 및 용자절차) 현행과 같음

제19조(용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용자받은 기관이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용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6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중 수

시로 용자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상환 원리금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3.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회계개시 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한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생략

제23조(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에 의한다.

제4장 기금운영 심의

제24조(기금운영 심의) 생략

제25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공채발행등 기금조성사항
3. 생략
4.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로 용자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공채상환 원리금
2. 제14조에 따른 용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회계개시 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한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23조(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에 의한다.

제4장 기금운영 심의

제24조(기금운영 심의) 현행과 같음

제25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공채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항
제5장 보 칙	제5장 보 칙
제26조(시행규칙) 생략	제2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취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설립)

- ① 증권등(증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